

한국 인삼산업의 세계화 전략

-제1장. 인삼종합정보시스템 구축방안/네번째-



박상원

- (사)한국인삼산업전략화협의회 회장
- 민주당 벤처위원회 부위원장
- 경제학박사
- CBS 객원해설위원

1. 사업개요
2. 현 황
3. 사업내역
4. 소요자원 및 예산

5) 시스템의 주요 구축대상 데이터베이스

가. 지번도를 활용한 전국 인삼재배현황도 구축

- 인삼재배현황도 구축과정
 - 인삼재배지 현지조사
 - 조사된 결과를 수치비번도에 입력하거나 전산입력
 - 입력된 인삼재배지에 필지별로 토양특성을 넣어 인삼재배 현황도를 구축
- 인삼재배현황도 구축세부 절차

나. 인삼재배지 이력 구축

- 인삼재배현황도와 연계한 재배지 이력관리
 - 재배기간, 인삼의 종류, 생산량, 생산품질, 임차인, 전작물, 토성, 물리·화학적 특성을 조사
 - 인삼재배현황도의 필지와 재배지 이력을 연계

다. 인삼관련 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

- 인삼산업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의 신상정보, 전공, 경력 등의 DB화

라. 인삼재배지 적성평가인자 DB화

- 기후적 요소(온도, 강우량, 일조량, 바람)의 실시간 정보 연계
- 토양특성
 - 토양조건: 토성
 - 물리적 특성: 토양의 3상 비율(고상, 액상, 기상), 경도, 가비중 등
 - 화학적 특성: 질소, 인산, 칼륨 등

(4) 전략화 방안

1) 인삼관련법

가. 인삼산업진흥에 관한 필요한 시책수립 및 실시

- 「인삼산업법」(일부 개정 2001. 1. 29, 법률 제6399호) 제1장 총칙 제3조(인삼산업진흥시책의 강구)

- ① 농림부 장관은 인삼 및 인삼류의 생산성 향상, 수출촉진, 유통개선, 가격안정 및 연구개발 등 인삼산업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

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. <개정 1996. 8. 8>

② 농림부 장관은 생산자단체 및 농림부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인삼의 우량 종묘, 경작기술의 개발·보급, 재배적지 조사 및 인삼제품의 개발 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1996. 8. 8>

나. e-biz의 임대정보시스템을 위한 근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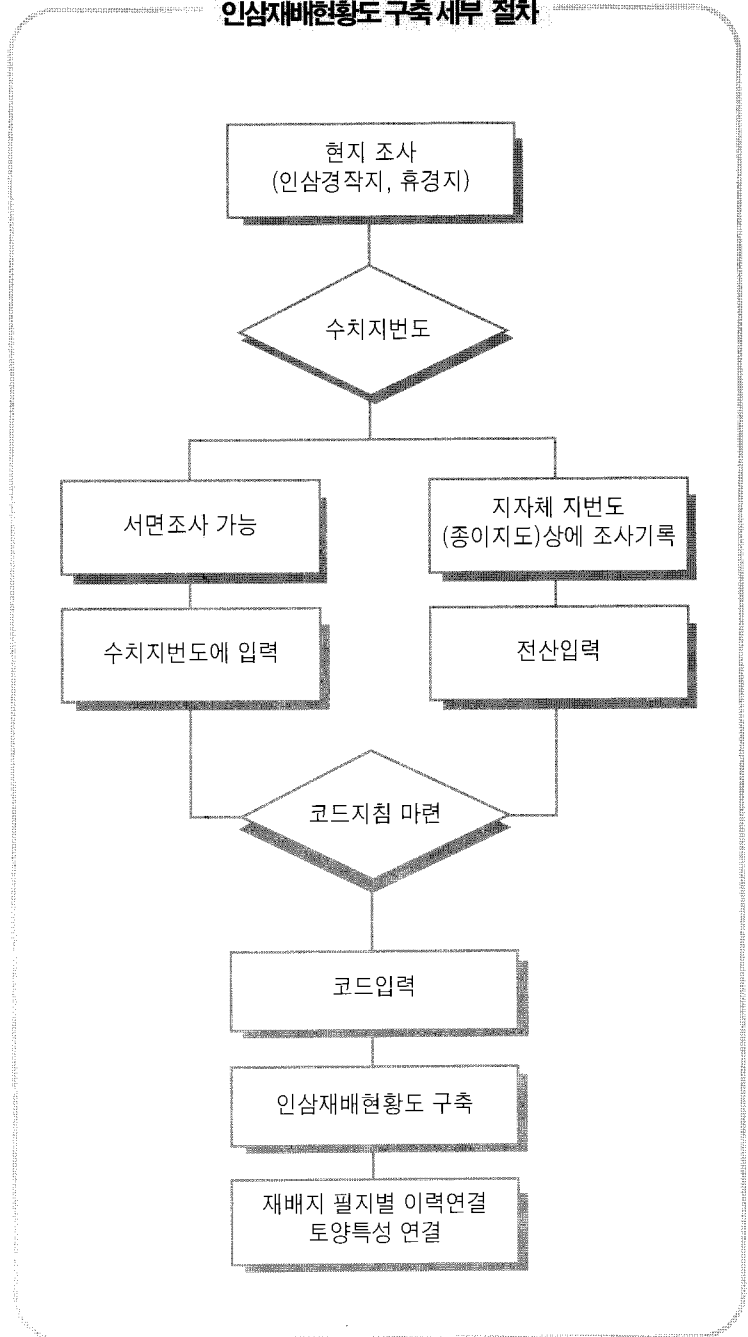
○ 인삼산업법(일부 개정 2001. 1. 29, 법률 제6399호) 제3장 계약경작 및 수급조절 제10조(계약경작 등)

① 농림부 장관은 수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인삼경작자 또는 생산자 단체와 인삼제조·가공업자 간의 계약경작을 권·알선할 수 있다. <개정 1996. 8. 8>

② 농림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경작의 확대 등을 위하여 해당 계약자에게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1996. 8. 8>

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경작의 권·알선과 사업비의 우선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1996. 8. 8>

인삼재배현황도 구축 세부 절차



**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른 I-Commercial Project의
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세부내용과 관련법**

- ❖ 일관성 있는 인삼의 생산량과 품질확보방안의 초석마련을 위한 GIS 재배적지 관리시스템 구축
- ❖ 고해상도의 위성영상과 NGIS체계의 토양도, 수치지형도, 생태자연도 등을 활용하여 인삼경작지, 휴경지, 재배등급지 등의 자료를 포함하는 1:5,000 축적의 인삼·약초 GIS 기본 농업·농촌 digital map 구축
- ❖ e-biz시스템 구축을 통한 약초적지 임대정보시스템 구축과 이를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적극적 투자유치
- ❖ WTO체제에 대처가능한 행정적 인삼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G-monitoring 시스템 구축 및 시스템의 주요 구축대상 데이터베이스



· 법	· 른	인삼협동조합법 (2007.7.1 폐지)	인삼산업법 (일부 개정 2001.1.29)
· 대	· 령	인삼산업법시행령	인삼협동조합법시행령
· 부	· 령	인삼산업법시행규칙	
· 농	· 립	4-5 인삼산업법	4-6 인삼협동조합법
· 고	· 시	(99-31) 고려인삼캐릭터 관리요령	(99-35) 인삼류 및 인삼종자· 종묘의 검사기관

다. I-monitoring시스템 구축을 위한 근거

○ 「인삼산업법」(일부 개정 2001. 1. 29, 법률 제6399호) 제1장 총칙 제3조(인삼산업진흥시책의 강구)

① 농림부 장관은 인삼 및 인삼류의 생산성 향상, 수출촉진, 유통개선, 가격안정 및 연구개발 등 인삼산업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. <개정 1996. 8. 8>

② 농림부 장관은 생산자단체 및 농림부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인삼의 우량 종묘, 경작기술의 개발·보급, 재배적지 조사 및 인삼제품의 개발 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1996. 8. 8>

○ 「인삼산업법」(일부 개정 2001. 1. 29, 법률 제6399호) 제5장 검사 및 수출입 등 제20조(인삼류 시장 접근물량 수입추천 <개정 1999. 1. 21>

① 삭제(1999. 1. 21)

② 세계무역기구(WTO)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상의 시장 접근물량에 해당하는 인삼류를 양허세율로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1996. 8. 8>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삼류

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액범위안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간에 납입하여야 한다. <개정 1996. 8. 8, 2001. 1. 21>

○ 「인삼산업법」(일부 개정 2001. 1. 29, 법률 제6399호) 제2장 인삼경작 및 수확 제8조 (경작방법 및 지도 등)

① 농촌진흥청장은 인삼경작자의 소득증진과 인삼류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중앙회장과 협의하여 표준인삼경작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② 농촌진흥청장 및 중앙회장은 인삼경작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작방법에 따라 경작하도록 권할 수 있다.

③ 인삼경작자는 인삼을 경작함에 있어서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잔류성 농약 및 화학비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 <개정 1996. 8. 8>

2) 표준화 방안

가. 표준화 목표

○ 시스템 및 DB 구축 표준화

- 표준화된 업무절차, 코드, 포맷 등을 통해 정보시스템의 표준화를 따르며, 정보시스템의 일관성, 유연

성 및 확장성을 극대화하고 향후 유관기관 시스템과의 연계편의 도모

○ 인삼관리 표준화

- WTO체제하에서 국내 농업생산품의 국제 품질경쟁력 제고와 교역촉진을 지원하면서 개별국가의 비관세 무역장벽을 타파하기 위하여 외국 및 국제(Codex) 식품규격 및 식품관리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인삼산업관련 국제규격화의 추진

나. 표준화 방안

○ 시스템 및 DB 구축 표준화

- 데이터 표준화 설정 및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

- 지리정보 핵심공통 컴포넌트(MapBase) 사용

- Open GIS Spec에 의한 정보의 접근 및 활용(SHAPE형태로 표준화)

- NGIS 기반의 수치지도를 활용하여 제작

- 각 유관기관에서 구축한 GIS 데이터정보의 활용

○ 인삼관리 표준화

- 인삼의 품질평가 및 등급구분의 표준화

- 재배유통관리를 위한 지리적 표시제도의 표준화

<계속>